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br>(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0년 03월 15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0년 03월 16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증권의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br>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br>[투자설명서]<br>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a href="http://dart.fss.or.kr">http://dart.fss.or.kr</a><br>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주) /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 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3. 모집예정금액.....	6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7
5. 인수에 관한 사항.....	7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7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8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8
4. 집합투자업자.....	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09.01.31)현재.....	9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7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6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8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0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35
1. 재무정보.....	3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7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7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등에 관한 사항.....	4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9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0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2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2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8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59
[붙임] 용어풀이.....	61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펀드코드: 61086)							
(종류) 클래스	A1	C1	C2	C3	C4	C-e	C-W	C-H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1087	61088	74435	92774	92775	61175	61586	7375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 3) 개방형 · 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 · 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기준>

집합투자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수익증권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매입한 경우
Class C-H 수익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b>명 칭</b>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펀드코드: 61086)							
<b>(종류) 클래스</b>	A1	C1	C2	C3	C4	C-e	C-W	C-H
<b>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61087	61088	74435	92774	92775	61175	61586	7375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09.28	최초 설정
2006.12.01	LateTrading관련, C4 class추가
2007.05.14	C4클래스 보수 120bp로 조정
2007.07.30	간접투자기구매입클래스의추가 C-W Class 신설
2007.09.11	장기주택마련저축클래스신설 및 표준약관의반영 투자대상정의명확화
2008.01.2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관련 조항의 변경 등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우리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천연자원 주식투자신탁 제1호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 2006년 6월 10일부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변경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 ->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
2009.05.28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의 건 등
2010.03.16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17시 이전 매입청구시: D+1→D+2, 17시 경과 후 매입청구시: D+2→D+3), 이익분배 명확화,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자산 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b>회 사 명</b>	우리자산운용(주)
--------------	-----------



같습니다.

(단위: %)

펀드명(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		보수				설정일
		선취	환매	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A1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1%	없음	0.9	1	0.08	0.03	2006-10-16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1	10억원 미만 매입시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1.75	1	0.08	0.03	2006-10-16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2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매입시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1.55	1	0.08	0.03	2007-10-05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3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매입시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1.35	1	0.08	0.03	미설정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4	100억원 이상 매입시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0.09	1	0.08	0.03	미설정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e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1.4	1	0.08	0.03	2006-10-18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보유, 간접투자기구에서 매입시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0	1	0.08	0.03	2006-10-30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 대상자	없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1.575	1	0.08	0.03	2007-09-17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

\* 신고서 최초 제출일인 2009.04.17 현재 비교지수는 'CS 천연자원 지수 90%, KBP 콜지수 10%'이나, 2009년 6월 10일부터는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로 비교지수가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 CS 천연자원 지수는 MSCI Mining 지수 50%, MSCI Energy 지수 25%, MSCI Paper & Forest 지수 15%, MSCI Chemical 지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만든 지수 중 Energy, Metal, 농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한 달러화로 표시되는 추가지수 (지수현황은 [http:// www.msicbarra.com](http://www.msicbarra.com)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전체 시장상황 또는 특정산업분야(Sector),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에 60% 이상)	규정에 의한 증권에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증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다만,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글로벌천연자원 주식”이라 합니다)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합니다. 이하 “파생상품”이라 합니다.)
금리스왵거래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5%이하 (ETF 30%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1. 및 2. 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p> <p>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p>

	<p>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8.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p> <p>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p>
<p>투자비율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li> <li>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li> <li>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li> <li>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li> <li>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제 18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li> </ol> <p>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ol>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p>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p> <p>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p> <p>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p> <p>③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p> <p>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수익증권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p> <p>2. 집합투자규약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p> <p>② 집합투자업자는 ①의 1.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p> <p>1. 소각</p> <p>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p>
<p>금전차입 등의 제한</p>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p> <p>1. 집합투자규약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2. 집합투자규약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p> <p>② ①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③ ①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p> <p>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집합투자규약 제 17 조제 2 항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합니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p>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p>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망 및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여러 증권시장에 존재하는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투자신탁자산의 40% 이하를 한국의 국공채, 신용등급 BBB-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채권, 예금 및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주로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기본운용방침이지만, 운용전략이나 환경의 변화에 각 자산 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내외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③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외자산의 운용업무 등을 2009년 6월 10일 현재,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에 위탁 예정입니다. (신고서 최초 제출일 당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이나 2009년 6월 10일자로 변경예정입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신탁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설정 또는 집합투자업자·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제반 사정등에 의한 경우, 선임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 4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될 경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④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투자대상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안전성 및 투자대상 시장의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⑤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⑥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로 정했습니다.

\* 신고서 최초 제출일인 2009.04.17 현재 비교지수는 'CS 천연자원 지수 90%, KBP 콜지수 10%'이나, 2009년 6월 10일부터는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지수 90%, KBP 콜지수 10%'로 비교지수가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 CS 천연자원 지수는 MSCI Mining 지수 50%, MSCI Energy 지수 25%, MSCI Paper & Forest 지수 15%, MSCI Chemical 지수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전체 시장상황 또는 특정산업분야(Sector), 지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이 투자신탁과 비교지수 간에는 포트폴리오 구성종목 및 가격변동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⑦ 주요 투자대상국 현황 (2008.12.31 현재)

- 캐나다

인구수	0.3 억 명
GDP	1 조 3264 억 달러
시가총액	9492 억 달러

<b>전체주식 PER</b> <b>주요 산업</b>	11.1 (S&P/TSX 지수) 장비, 화학
---------------------------------	-----------------------------

출처 : Bloomberg

- 미국

<b>인구수</b> <b>GDP</b> <b>시가총액</b> <b>전체주식 PER</b> <b>주요 산업</b>	3.1 억 명 13 조 8112 억 달러 9 조 9779 억 달러 11.9 (S&P500 지수) 에너지, 철강
--	---

출처 : Bloomberg

- 호주

<b>인구수</b> <b>GDP</b> <b>시가총액</b> <b>전체주식 PER</b> <b>주요 산업</b>	0.2 억 명 8217 억 달러 5754 억 달러 9.8 (S&P/ASX200 지수) 광산, 장비, 화학
--	--

출처 : Bloomberg

⑧ 글로벌 자원시장 전망

- 세계 주요국 및 기업의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중국 및 아시아의 성장 지속에 따라 자원수요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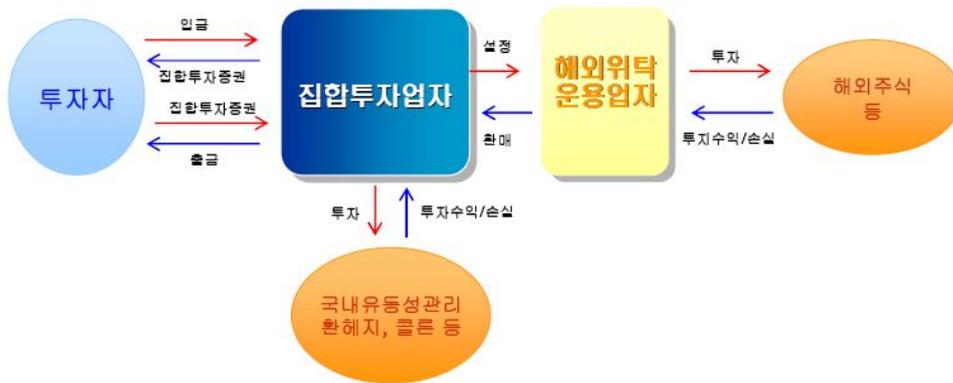
- ①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주식가격의 변동성, 헤지수단 및 헤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환헤지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도중에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익(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하면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주요통화[국제거래상 주요결제수단 중에서 국내 선물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 순자산평가액 70±30%의 목표 환헤지 수준을 유지하는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며, 주요통화 이외의 기타통화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 전략의 실행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스왑, 옵션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 등으로 상기 목표 환헤지 수준의 유지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는 목표 환헤지 수준을 벗어나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설정/헤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회피가 목적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③ 일부 이머징 국가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투자신탁의 자금이 납입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일부 이머징 국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투자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와는 관계 없이 투자자산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2) 수익구조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1)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해외 투자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환율변동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물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현재 환헤지 대상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자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자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투자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거래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도 있으며,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수도 있으며,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대상 국가들의 대표적인 지수들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과 관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위탁해지위험	동 펀드는 외화자산과 관련된 운용업무를 해외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투자신탁의 100억 미만의 소규모설정 또는 집합투자업자·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제반 사정등에 의한 경우, 선임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 4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될 경우 별도의 업무위탁 없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환매연기위험</p>	<p>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순자산가치 변동위험</p>	<p>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p>	<p>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중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권리행사 위험</p>	<p>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예상배당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거래중지 위험</p>	<p>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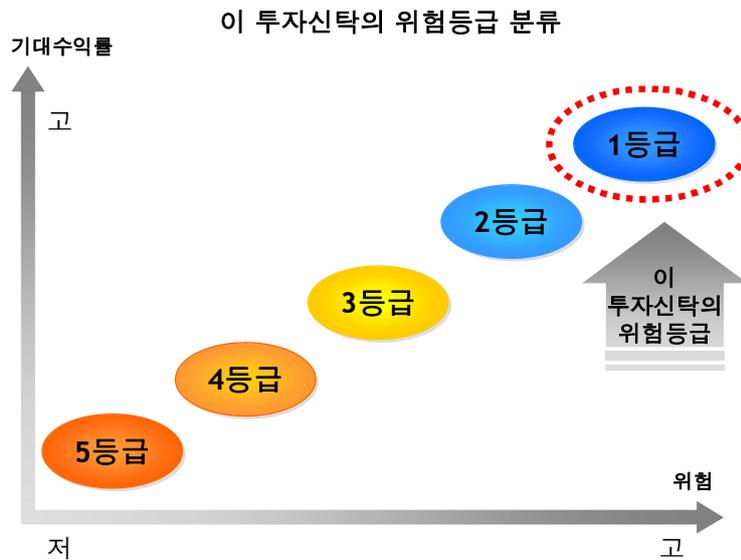
<p>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p>	<p>투자신탁이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 억원 미달하고 3 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p>
<p>세금 관련 위험</p>	<p>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p> <p>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b>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b>할 수 있습니다.</p> <p>*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p>
<p>잠재적 이해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p>	<p>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 3 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p> <p>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법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p>
<p>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p>	<p>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p>

	<p>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p>*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기구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인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p>
--	--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게 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 등은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등에만 투자하는 혼합주식형투자신탁이나,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천연자원 관련 가격 및 시황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원자재 및 에너지 등 천연자원관련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위험평가 점수	집합투자기구 예시
Level 1	매우 높은 위험	20점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저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li> <li>-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개발형/임대형 포함)</li> </ul>
Level 2	높은 위험	20점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li> <li>-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li> </ul>

			미만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3	중간 위험	40점이상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 이하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규약상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4	낮은 위험	60점이상	- 국공채 및 투자적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장내차익거래목적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5	매우 낮은 위험	80점이상	- 모든 유형의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1등급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5등급까지 5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 매입

####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펀드코드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61087	납입금액에 관계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61088	납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	74435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	92774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	92775	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수익증권	61175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
Class C-W 수익증권	61586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매입한 경우
Class C-H 수익증권	7375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⑧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⑨⑧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⑪ 집합투자업자는 ⑩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⑫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 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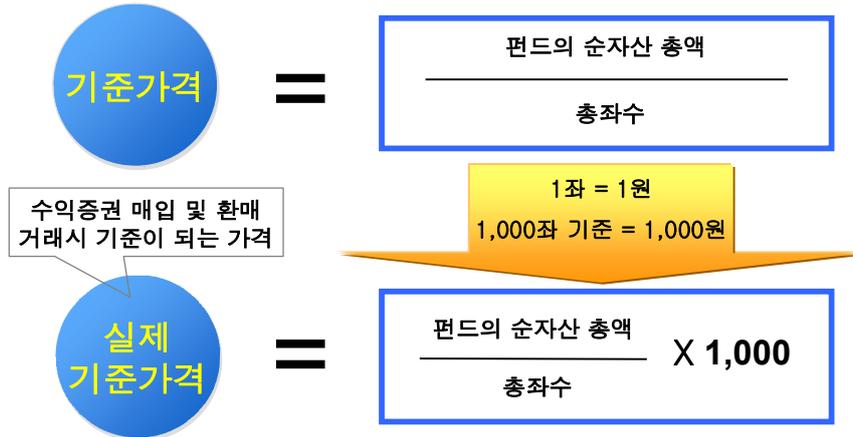
구분	내용
계산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계산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계산·공시하지 아니합니다.
공고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서류공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wooriam.com">http://www.wooriam.com</a> )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 의 인터넷 홈페이지
--------------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산정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2)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클래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1	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C2	10 억원 이상 50 억원 미만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e	온라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하는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보유, 집합투자기구에 서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C1	10 억원 미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3	50 억원 이상 100 억원 미만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C4	100 억원 이상 매입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A1	1	0.9	0.08	0.03	0.0049	2.0149	-	0.2120	
C1	1	1.75	0.08	0.03	0.0056	2.8656	-	0.2115	
C2	1	1.55	0.08	0.03	0.0045	2.6645	-	0.2114	
C3	1	1.35	0.08	0.03	0.0056	2.4656	-	0.2115	
C4	1	0.09	0.08	0.03	0.0056	1.2056	-	0.2115	
C-e	1	1.4	0.08	0.03	0.0063	2.5163	-	0.2118	
C-W	1	0	0.08	0.03	0.0045	1.1145	-	0.2325	
C-H	1	1.575	0.08	0.03	0.0039	2.6889	-	0.2067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	-	사유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08.10.16 ~ 2009.10.15]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 회계연도: 2008.10.16 ~ 2009.10.15]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미설정된 펀드의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은 설정된 클래스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06	728	1,176	2,417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4	899	1,530	3,225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3	838	1,429	3,028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3	777	1,328	2,828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4	385	666	1,468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8	793	1,354	2,879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356	617	1,363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76	846	1,441	3,05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후취판매수수료를 0%,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종류별로(A1,C1)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계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라.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손실에 대한 과세이익 상계 방안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인 Class C-H 가입자에 한함)**

이 투자신탁의 **Class C-H 수익증권은 만18세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합니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합니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하여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 장기주택마련 투자신탁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합니다.

1) 가입자격

가입대상	<p><b>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p> <p>②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p>
비과세혜택 가입시한	2012년 12월 31일 까지 (단, 소득공제 혜택은 2009.12.31 이전 가입자에 한함)
가입한도	분기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합계액) 선납 또는 후납 불가

2) 세제혜택 및 법정 해지요건

배당소득 비과세	<p><b>1) 저축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b></p> <p><b>2) 2012. 12. 31 까지 가입자에 해당됨</b></p> <p>* 단,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p> <p>※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li> <li>▪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li> <li>▪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li> <li>▪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시 (2008.1.1이후 주택취득자에 한함)</li> </ul>
근로소득 공제	<p><b>1) 공제대상 : 2009.12.31이전 가입한 자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b></p> <p><b>2) 내용: 근로소득자인 세대주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이 경우 주택자금 대출과 합산하여 산정함)</b></p>
세액추징	<p><b>1) 이자소득세 추징: 저축계약체결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 또는 원금이나 배당수익 등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함</b></p> <p><b>2)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액 추징 :</b>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함) 추징. 다만, 실제 소득공제 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p>
법정 해지요건	<p><b>최초 가입 7년 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시 법정해지 처리</b></p> <p><b>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b></p>

※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3기( 2008.10.16 - 2009.10.15 )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2기( 2007.10.16 - 2008.10.15 )	대주회계법인	적정
제 1기( 2006.10.16 - 2007.10.15 )	대주회계법인	적정

####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 2009.10.15 )	( 2008.10.15 )	( 2007.10.15 )
운용자산	156,826,565,905	144,357,329,697	269,485,905,128
증권	153,134,126,456	143,275,136,132	268,867,256,61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3,692,439,449	1,082,193,565	618,648,51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092,654,227	3,775,510,347	2,177,668,534
자산총계	159,919,220,132	148,132,840,044	271,663,573,662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22,431,167	6,384,546,335	5,675,575,798
부채총계	722,431,167	6,384,546,335	5,675,575,798
원본	231,484,279,818	241,608,418,041	182,506,641,450
수익조정금	-188,015,383	1,887,280,920	36,499,057,789
이익잉여금	-72,099,475,470	-101,747,405,252	46,982,298,625
자본총계	159,196,788,965	141,748,293,709	265,987,997,86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3기	제 2기	제 1기
	( 2008.10.16 - 2009.10.15 )	( 2007.10.16 - 2008.10.15 )	( 2006.10.16 - 2007.10.15 )
운용수익	23,752,601,729	-101,612,748,430	47,166,984,848
이자수익	200,718,830	1,071,728,621	541,736,592
배당수익	3,557,551,732	5,180,080,134	1,691,768,119
매매/평가수익(손)	19,994,331,167	-107,864,557,185	44,933,480,137
기타수익	0	0	0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운용비용	43,605,800	20,671,000	1,400,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43,605,800	20,671,000	1,400,000
기타비용	132,794,395	113,985,822	183,286,223
당기순이익	23,576,201,534	-101,747,405,252	46,982,298,625
매매회전율	102.74	93.37	77.87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아래의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아래의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3기(2009.10.15)		제2기(2008.10.15)		제1기(2007.10.15)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3,692,439,449		1,082,193,565		618,648,517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3,409,669		225,235,565		166,428,517	
2. 예치금						
3. 증거금	3,219,029,780		856,958,000		452,220,000	
<b>대출채권</b>		1,500,000,000		24,721,660,000		16,280,320,000
1. 콜론	1,500,000,000		24,721,660,000		16,280,32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51,634,126,456		118,553,476,132		252,586,936,611
1. 지분증권	149,588,325,840		113,827,300,170		236,612,470,225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2,045,800,616		4,726,175,962		15,974,466,386	
<b>파생상품</b>		0		0		0
1. 파생상품		0		0		0
<b>부동산과 실물자산</b>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3,092,654,227		3,775,510,347		2,177,668,53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3,074,378,256		943,001,850	
2. 정산미수금	516,744,000				24,000,000	
3. 미수이자	1,768,332		7,251,259		14,915,692	
4. 미수배당금	72,095,404		183,121,682		174,130,309	
5. 기타미수입금	2,496,099,191				896,051,950	
6. 기타자산	5,947,300		510,759,150		125,568,733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159,919,220,132</b>		<b>148,132,840,044</b>		<b>271,663,573,662</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722,431,167		6,384,546,335		89,156,932,21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355,101,223			
2. 정산미지급금	847,000		449,520,000			
3. 해지미지급금	700,173,149		1,670,432,126		5,609,486,519	
4. 수수료미지급금	5,655,156		7,460,985		5,616,403	
5. 기타미지급금	6,926,249		3,902,032,001		83,538,684,815	
6. 기타부채	8,829,613				3,144,475	
<b>부 채 총 계</b>		<b>722,431,167</b>		<b>6,384,546,335</b>		<b>89,156,932,212</b>
<b>자 본</b>						
1. 원 본	231,484,279,818		241,608,418,041		182,506,641,45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72,287,490,853		-99,860,124,332		0	
(발행착수 당기: 231,484,279,818 좌 전기: 241,608,418,041 좌 전전기: 182,506,641,450 좌)						
(기준가격 당기: 687.72 원 전기: 586.69 원 전전기: 1,000.00 원)						
<b>자 본 총 계</b>		<b>159,196,788,965</b>		<b>141,748,293,709</b>		<b>182,506,641,450</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159,919,220,132</b>		<b>148,132,840,044</b>		<b>271,663,573,662</b>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3기(2008.10.16-2009.10.15)		제2기(2007.10.16-2008.10.15)		제1기(2006.10.16-2007.10.15)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3,758,270,562		6,251,808,755		2,233,504,711
1. 이 자 수 익	200,718,830		1,071,728,621		541,736,592	
2. 배당금수익	3,557,551,732		5,180,080,134		1,691,768,119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322,933,626,046		177,209,665,540		57,999,445,433
1. 지분증권매매차익	21,517,433,051		22,700,260,903		44,416,637,98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13,231,350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62,809,255,000		15,746,700,000		1,246,000,000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43,270,152,158		69,578,708,120		10,793,032,364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12,263		142,840		423,117	
7. 기타거래차익	195,336,773,574		69,183,853,677		1,430,120,617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302,982,900,679		285,094,893,725		13,067,365,296
1. 지분증권매매차손	71,102,248,435		116,667,521,335		7,343,978,79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153,281,438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61,082,966,800		26,403,441,000		1,331,400,000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47,772,601,000		46,519,247,724		3,459,014,665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494,809		4,150,404		2,024,926	
8. 기타거래손실	123,024,589,635		95,500,533,262		777,665,476	
<b>운 용 비 용</b>		132,794,395		113,985,822		183,286,223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32,794,395		113,985,822		183,286,223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3,576,201,534		-101,747,405,252		46,982,298,625
<b>좌달순이익(또는 좌달순손실)</b>		0.101847959		-0.421125249		0.25742788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모)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08.10.16 - 2009.10.15	2,416	1,323	596	345	697	407	2,315	1,592
2007.10.16 - 2008.10.15	1,825	1,813	3,719	3,677	3,127	3,072	2,416	1,417
2006.10.16 - 2007.10.15	1	1	1,750	2,205	402	502	1,825	1,82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2008.10.16 - 2009.10.15	1,878	1,006	445	250	446	250	1,877	1,238
2007.10.16 - 2008.10.15	1,371	1,362	2,212	2,175	1,705	1,657	1,878	1,078
2006.10.16 - 2007.10.15	0	0	1,309	1,627	330	404	1,371	1,37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07.10.16 - 2008.10.15	306	304	397	388	341	331	362	206
2006.10.16 - 2007.10.15	1	1	328	404	48	59	306	30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07.10.16 - 2008.10.15	10	10	10	10	10	8	10	6
2006.10.16 - 2007.10.15	0	0	10	10	0	0	10	1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3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지분수)		지분수)		지분수)		지분수)	
2007.10.16 - 2008.10.15	50	50	21	21	71	68	0	0
2006.10.16 - 2007.10.15	0	0	0	0	0	0	50	5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2008.10.16 - 2009.10.15	130	69	72	41	48	27	154	101
2007.10.16 - 2008.10.15	75	75	190	187	135	128	130	74
2006.10.16 - 2007.10.15	0	0	87	107	23	29	75	7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2008.10.16 - 2009.10.15	72	39	15	8	87	53	0	0
2007.10.16 - 2008.10.15	45	45	65	63	38	36	72	42
2006.10.16 - 2007.10.15	0	0	45	56	1	1	45	45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H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출자 지분수)	금액		

2008.10.16 - 2009.10.15	3	2	4	2	0	0	7	5
2007.10.16 - 2008.10.15	0	0	4	3	0	0	3	2
2006.10.16 - 2007.10.15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081015- 20091015	20071015- 20091015	20061013- 20091015	20041015- 20091015	20061016- 20091015
운용(모)	17.22	-17.05			0.08
비교지수	25.90	-14.50			2.05
A1	14.93	-18.77			-1.93
비교지수	25.90	-14.50			2.05
C1	13.97	-19.50			-2.78
비교지수	25.90	-14.50			2.05
C2	14.19	-19.33			-17.36
비교지수	25.90	-14.50			-13.16
C-e	14.36	-19.20			-2.44
비교지수	25.90	-14.50			2.05
C-W	15.95	-18.01			-1.09
비교지수	25.90	-14.50			2.02
C-H	14.16	-19.34			-13.49
비교지수	25.90	-14.50			-9.37

(주 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90%,KBP콜 10%

\* 설정일로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는 'CS천연자원지수 90%,KBP콜 10%'로 비교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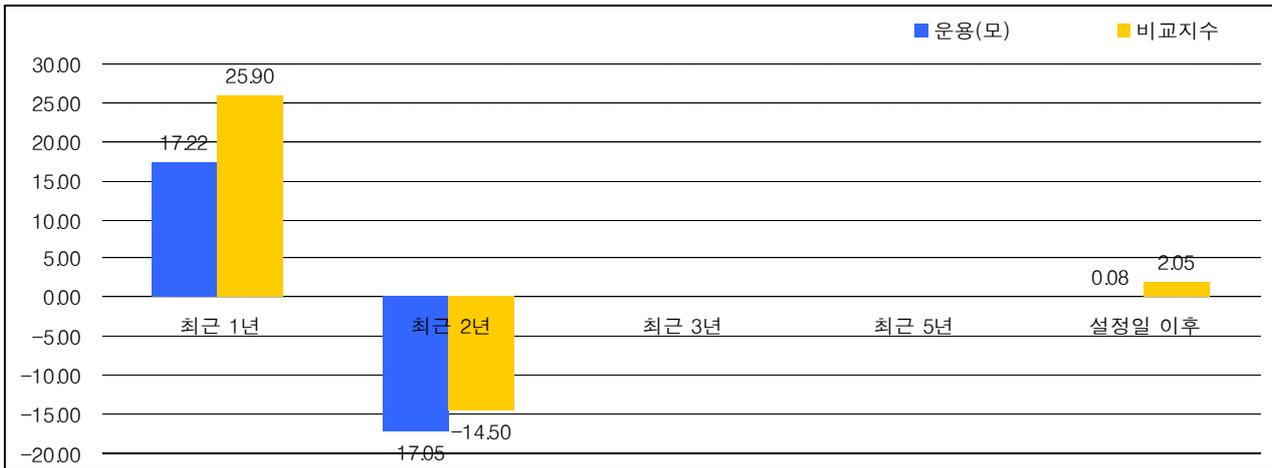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본 수익률은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 6)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081016-20091015	20071016-20081015	20061016-20071015		
운용(모)	25.57	-40.94	45.74		
비교지수	40.49	-41.98	45.46		
A1	23.11	-42.24	43.03		
비교지수	40.49	-41.98	45.46		
C1	22.09	-42.79	41.86		
비교지수	40.49	-41.98	45.46		
C2	22.33	-42.67			
비교지수	40.49	-41.98			
C-e	22.51	-42.56	42.33		
비교지수	40.49	-41.98	45.42		
C-W	24.21	-41.66	44.09		
비교지수	40.49	-41.98	45.21		
C-H	22.30	-42.66			
비교지수	40.49	-41.98			

(주 1) 비교지수 : MSCI World Commodity Producers USD 90%,KBP콜 10%

\* 설정일로부터 2009년 6월 9일까지는 'CS천연자원지수 90%,KBP콜 10%'로 비교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본 수익률은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주 6)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 가능 합니다.

(주 7) 모투자 신탁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A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1 : 최근 4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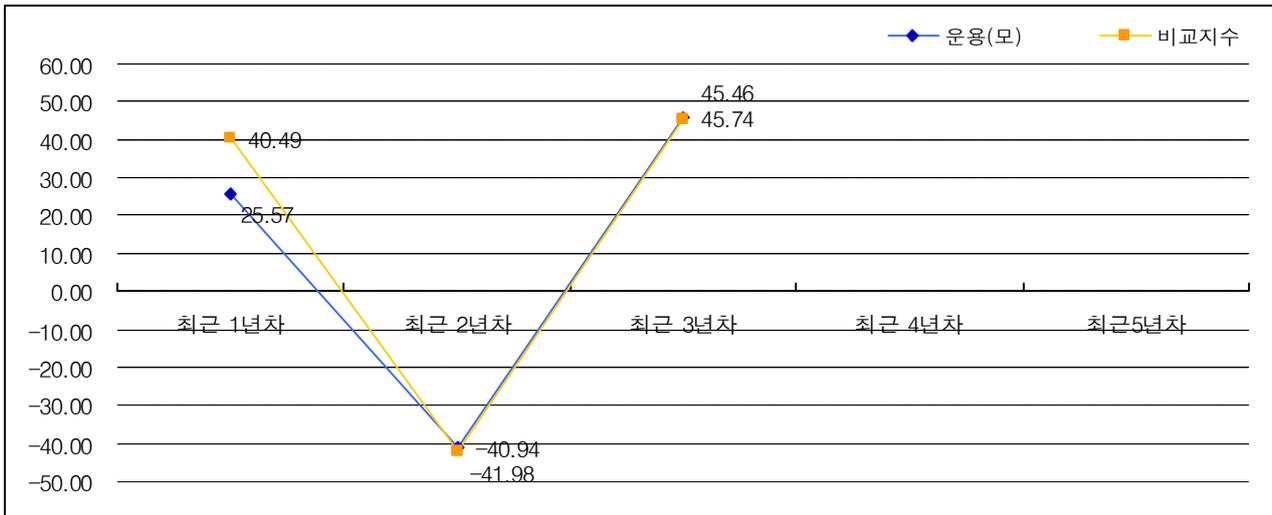
Class C2 : 최근 3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Class C-e : 최근 3년차 수익률은 11.9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W : 최근 3년차 수익률은 11.52개월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Class C-H : 최근 3년차 수익율은 6개월 미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3)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10.01.15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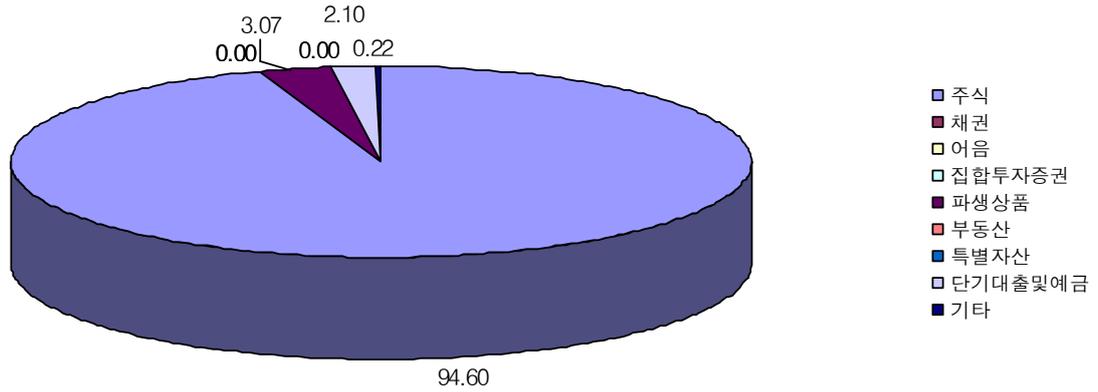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23	0	0	0	0	31	3	58
	(0.00)	(0.00)	(0.00)	(0.00)	(39.80)	(0.00)	(0.00)	(0.00)	(0.00)	(54.16)	(6.04)	(4.00)
AUD	128	0		0	0	0		0		0	0	128
	(99.9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8.00)
CAD	215	0		0	0	0		0		0	0	216
	(99.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8)	(0.00)	(14.00)
CHF	12	0		0	0	0		0		0	0	13
	(99.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8)	(0.00)	(1.00)
EUR	155	0		0	0	0		0		1	0	156
	(99.4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56)	(0.00)	(10.00)
GBP	358	0		0	0	12		0		0	0	370
	(96.69)	(0.00)	(0.00)	(0.00)	(0.00)	(3.24)	(0.00)	(0.00)	(0.00)	(0.07)	(0.00)	(23.00)
HKD	1	0		0	0	0		0		0	0	1
	(99.9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0)	(0.00)
JPY	44	0		0	0	0		0		0	0	44
	(99.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6)	(0.00)	(3.00)
NOK	21	0		0	0	0		0		0	0	21
	(99.7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9)	(0.00)	(1.00)
SEK	7	0		0	0	0		0		0	0	7
	(99.9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0.00)
SGD	4	0		0	0	0		0		0	0	4
	(99.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0.00)	(0.00)
USD	557	0		0	0	14		0		0	0	571
	(97.54)	(0.00)	(0.00)	(0.00)	(0.00)	(2.42)	(0.00)	(0.00)	(0.00)	(0.04)	(0.00)	(36.00)
합계	1,502	0	0	0	23	26	0	0	0	33	3	1,588
	(94.60)	(0.00)	(0.00)	(0.00)	(1.45)	(1.62)	(0.00)	(0.00)	(0.00)	(2.10)	(0.22)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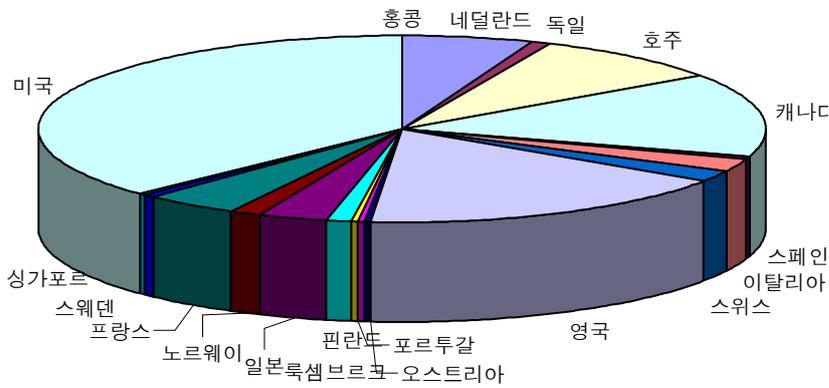
(주3) 장내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 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 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구성 현황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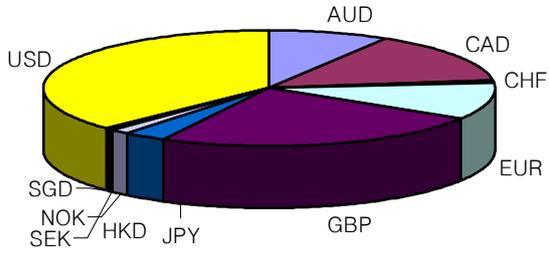


[ 2010.01.15 현재 / 단위 : 억원, % ]

거래국	해외주식	
	금액	비중
네덜란드	89	5.91%
독일	13	0.89%
호주	128	8.51%
캐나다	215	14.30%
스페인	12	0.78%
이탈리아	33	2.18%
스위스	30	1.98%
영국	252	16.75%
오스트리아	5	0.33%
핀란드	6	0.43%
포르투갈	2	0.11%
룩셈부르크	19	1.24%
일본	44	2.90%
노르웨이	21	1.42%
프랑스	65	4.35%
스웨덴	7	0.47%
싱가포르	4	0.28%
미국	558	37.13%
홍콩	1	0.05%

-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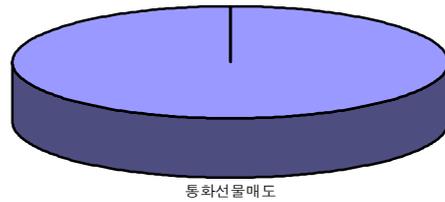
[ 2010.01.15 현재 / 단위 : 억원, % ]

거래통화	해외주식	
	금액	비중
AUD	128	8.51%
CAD	215	14.34%
CHF	12	0.83%
EUR	155	10.31%
GBP	358	23.81%
HKD	1	0.05%
JPY	44	2.90%
NOK	21	1.42%
SEK	7	0.47%
SGD	4	0.28%
USD	557	37.09%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2010.01.15 현재 / 단위 : 억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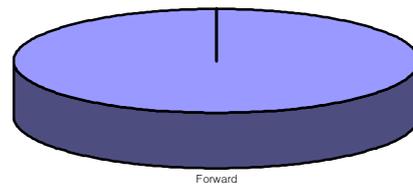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통화선물매도	45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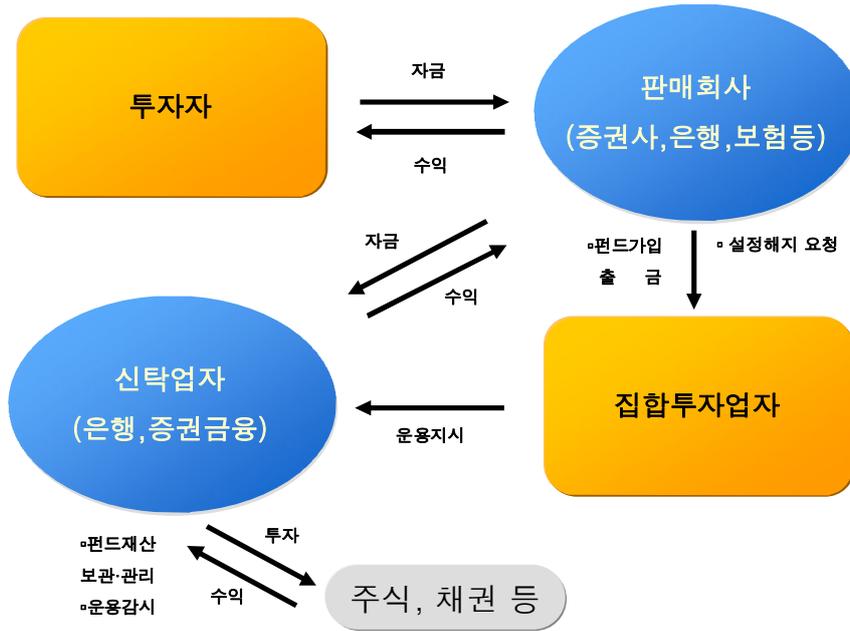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2010.01.15 현재 / 단위 : 억원, % ]

자산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Forward	595	100.00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1) 회사개요

<b>회사명</b>	우리자산운용(주)
<b>주소 및 연락처</b>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KT빌딩 17층 (연락처: 02) 780-0300, www.wooriam.com)
<b>회사연혁</b>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b>자본금</b>	333억원
<b>주요주주현황</b>	우리금융지주

#### 2)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③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④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⑤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⑥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HSBC 펀드 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십억원)

구분	대차대조표		구분	손익계산서	
	2009.03.31	2008.03.31		2009.03.31	2008.03.31
현금 및 예치금	60.3	67.6	영업수익	40.3	51.7
유가증권	3.9	0.3	영업비용	23.8	28.0
대출채권	1.0	0.9	<b>영업이익</b>	<b>16.5</b>	<b>23.7</b>
유형자산	1.2	0.7	영업외수익	1.4	0.0
기타자산	15.2	17.3	영업외비용	16.2	3.6
<b>자산총계</b>	<b>81.5</b>	<b>86.8</b>	<b>경상이익</b>	<b>1.6</b>	<b>20.1</b>
예수부채	0.4	0.3	법인세비용	1.5	5.8
기타부채	19.3	11.8	<b>당기순이익</b>	<b>0.1</b>	<b>14.4</b>
<b>부채총계</b>	<b>19.7</b>	<b>12.0</b>			
자본금	33.3	33.3			
자본잉여금	13.7	13.7			
이익잉여금	14.9	27.8			
자본조정	0.0	0.0			
<b>자본총계</b>	<b>61.8</b>	<b>74.8</b>			
<b>부채와자본총계</b>	<b>81.5</b>	<b>86.8</b>			

4) 운용자산규모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4,724	16,456	6,313	0	666	9,332	0	7,302	10,206	0	53,835	128,833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①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2009.06.10~)

해외위탁운용회사명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
설립일	1983.08.08
주소 및 연락처	50 Fremont Street, Suite 3900,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5, USA (대표전화: +1-415-546-6056)

주1) 신고서 최초 제출일 현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imited**((설립일: 1982.12.21, 주소 및 연락처: One Cabot Square London E144QJ, UK (대표전화: 44-20-7888-1000))이나 **2009년 6월 10일자로 Mellon Capital Management Corporation**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업무 위탁회사의 주요 업무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 운용지시 / 단순매매주문업무 등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보수는 이 투자신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업자의 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보수의 지급 방법은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은 업무위탁개시일로부터 업무위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
주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 빌딩
전화번호	(02)2004-00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a href="http://www.kr.hsbc.com">http://www.kr.hsbc.com</a>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의무 및 책임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관련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i. 투자설명서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ii.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ii.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iv.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v.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vi.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vii.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HSBC 펀드 서비스(주)
주소	(150-73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전화번호	(02)3771-9800
연혁	2000.03 설립

**2)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자자산을 평가
-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 법령, 집합규약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채권평가	(110-730)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02)399-3350 -http://www.koreab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 억원
나이스채권평가	(150-97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02)398-3900 -http://www.npricing.co.kr/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 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 억원

**2) 주요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1) 수익자 총회 등

#####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으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라. 반대매수 청구권

- 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잔여재산 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 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관련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우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wooriam.com](http://www.wooriam.com)) 또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1) 정기보고서

####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2개월 이내까지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나.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집합투자규약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1)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이외의 변경사항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회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com),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관련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 각 항목별 평가 배점 및 평가항목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증권 거래

구분	선정 기준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주기: 분기 1회</li> <li>○ 평가자: 채권운용역 및 채권트레이더</li> <li>○ 평가기준: 리서치 35%, 거래능력 50%, 중개사리스크 5%, 기타 10%</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 8개사, B그룹 12개사를 선정</li> <li>- A그룹 전체에 분기약정의 60% 이상, B그룹 전체에 분기약정의 40% 이하 목표로 거래</li> </ul> </li> </ul>
국내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탐방 주선, 리서치 지원, 정보 제공, 요청 자료 응대 및 주문 체결 능력 등</li> </ul> </li> <li>○ 기간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 배분 실시</li> </ul>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주기 : 매 분기 별</li> <li>○ 평가자 : 글로벌운용팀 운용역 등</li> <li>○ 평가기준 : 전반적인 해외주식 주문 체결 능력, 리서치의 제공, 후선업무 처리 지원 등을 감안하여 거래 적격 중개회사 선정</li> <li>*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투자증권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름</li> </ul>
인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주기 : 매분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li> <li>○ 평가자 : 인덱스&amp;ETF 운용팀</li> <li>○ 평가대상 : 증권사 및 선물회사</li> <li>○ 평가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증권사를 평가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등급별로 분류 한 후 등급별 최대 배분비율 결정</li> <li>○ 평가항목 : 주문수행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기타 운용기여도 등</li> </ul>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구분	선정 기준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및 배점(국채선물회사)</li> <li>○ 매매 체결능력 20%</li> <li>○ 중개사 리스크 15%</li> <li>○ 중개수수료 30%</li> <li>○ 시장정보 제공능력 20%</li> <li>○ 시장조성능력 15%</li> </ul>
국내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 수행 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펀드 활성화 관련 등</li> <li>○ 기간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등급별로 차등 배분 실시</li> </ul> </li> </ul>
해외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항목 및 배점(선물회사)</li> <li>○ 주문수행능력 60%</li> <li>○ 리서치 20%</li> <li>○ 중개수수료율 10%</li> <li>○ 기타 서비스 10%</li> </ul>
인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주기 : 매분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li> <li>○ 평가자 : 인덱스&amp;ETF 운용팀</li> <li>○ 평가대상 : 증권사 및 선물회사</li> <li>○ 평가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증권사를 평가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등급별로 분류 한 후 등급별 최대 배분비율 결정</li> <li>○ 평가항목 : 주문수행능력, 중개수수료율, 리서치 지원 및 기타 운용기여도 등</li> </ul>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 제외)
  - 나. 신탁업자
  -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 2009년5월27일부터 집합투자업자의 사명이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식회사에서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기 신고된 본 문건 첨부서류 중 업무위탁계약서상에 기재된 상호인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식회사는 변경된 상호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기존 업무위탁계약의 효력이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파생형	법령상 운용규제에 따른 분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재간접형	법령상 운용규제에 따른 분류로서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는 의미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우리 글로벌 천연자원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 등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등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익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